

## 2024년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

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27일

궁능유적본부장

### 1. 최종 합격자 명단

| 직종  | 응시분야 | 응시번호  | 성명    |
|-----|------|-------|-------|
| 공무직 | 조리원  | 조리-02 | 유 ○ ○ |

※ 예비합격자 : 해당자 없음

### 2.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

가. 최종 합격자는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종대왕유적관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제출기한 : 2024. 7. 2.(화) 17:00까지
- 제출장소 : 세종대왕역사문화관 2층(사무실)
- 제출서류
  - 채용신체검사서(2년 이내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 가능) 1부
  - 주민등록등본·초본 각 1부 \*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
 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[붙임1 서식]
  -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[붙임2 서식]

-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[붙임3 서식]
- 반명합판 사진 1매, 통장 사본 1부, 도장
- ※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의료수급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 사본 각 1부

### 3. 기타사항

가. 제출기한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「공무원임용령」 제11조제2항을 준용하여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, 합격은 자동적으로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다음의 경우 합격 통보 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-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발견 시
-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건강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결격사유 확인 시

다. 기타 문의사항은 세종대왕유적관리소(031-880-4703)로 연락 바랍니다.

- 붙임 1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
2.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
3.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. 끝.

#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신규 채용 및 인사업무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| 연번 | 행정정보명      | 연번 | 행정정보명 |
|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|
| 1  | 주민등록표 등·초본 |    |       |
|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|
|    |            |    |       |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 ☐주민등록 ☐여권 ☐외국인등록 ☐운전면허 ) 번호 :

#### 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 
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 
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24년      1월      1일

대상자    본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     명      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생년월일    :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화번호    :

#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공무원직 등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공정채용기준 제25조(채용결격사유)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

- 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    1. 피성년후견인
  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 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 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  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   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  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 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 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2024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채용예정자: (서명)

국가유산청 공능유적본부장 귀하

##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### 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<u>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</u><br>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<br>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br>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2. ' <u>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</u> 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<br>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<br>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<br>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<br>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<br>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<br>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 |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br>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3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</u> 된 사실이 있는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br>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</u><br>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br>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4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</u>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br>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br>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<br>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br>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|
| 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24년 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 일

생년월일          .          .          지 원 자

(서명)

국가유산청 공능유적본부장 귀하